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 13 선고 2021가합100031(본소), 2021가합101997(반소) 판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2. 10. 5 선고 2022나10550(본소), 2022나10567(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 13 선고 2021가합100031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창환, 추헌재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서수민, 이경목

피고1. 주식회사 C

2. 주식회사 D

3. E 주식회사

4.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강성래

5. 대한민국

변론 종결2021. 12. 23.

판결 선고2022. 1.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E 주식회사, 피고 F 주식회사 사이에, 주식회사 G가 2020. 1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년 금제2406호로 공탁한 1,445,237,579원 중 893,994,29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사이에서,
 -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C가 별지 기재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2020. 5. 4.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주식회사 C에 주문 제2항 기재 893,994,292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E 주식회사,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 나.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 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 라.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F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식회사 G가 2020. 1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년 금 제2406호로 공탁한 1,445,237,579원 중 1,084,592,64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3의 가항 및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가 피고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G에 대한 2,200,000,000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2019. 6. 27.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하고, 다른 당사자들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는 지붕판금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원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피고 E으로부터 강판 등을 공급받고, 피고 D, 피고 F로부터 글라스울 등을 공급받아 샌드위치 판넬 제작·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 원고와 위 피고들에 대하여 물품공급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관할관청: 예산세무서)에 147,233,15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2) G는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등을 영위하며 피고 C로부터 샌드위치 판넬을 납품 받은 회사로, 2020. 5.경 피고 C에 1,445,237,579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이하 'G의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피고 C의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

피고 C, 원고 및 피고 E은 G에게, G의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되었다며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1	원고	2020. 5. 4.	2020. 5. 7.	G의 채무 중 893,994,292원
2	피고 E	2020. 5. 4.	2020. 5. 7.	G의 채무 중 300,000,000원

1	원고	2020. 5. 4.	2020. 5. 7.	G의 채무 중 893,994,292원
3	원고	2019. 6. 27.	2020. 5. 25.1) 새로운 채권양도통지가 아니라 종전 채권양도통지를 이유로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이다. 2020. 6. 9.	G의 채무 중 2,200,000,000원

다. G의 채무에 대한 가압류 등

피고 B, 피고 D, 피고 F와 피고 대한민국은 G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G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고, 이는 각 G에 송달되었다.

1	피고 D	2020.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8224 채권가압류, 700,000,000원
2	피고 B	2020.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257 채권가압류, 100,000,000원
3	피고 F	2020.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11248 채권가압류 300,000,000원
4	피고 대한민국	2020. 11. 2.	채납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 147,233,150원
5	피고 D	202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27596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401,428,042

라. G의 공탁

G는 2020. 12. 3. 'G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되었고,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법 제487조에 근거하여 피공탁자를 피고 C, 피고 E 및 원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년 금 제2406호로 1,445,237,579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위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피고 C, 피고 E: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6. 27. G가 피고 C에게 지급할 상거래채권 중 22억 원을 양도받고(이하 '1차 채권양도'라 한다), 2020. 5. 4. 피고 C가 G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청구채권 893,994,292원을 양도받았다(이하 '2차 채권양도'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893,994,292원은 2020. 5. 7. 2차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원고에, 300,000,000원은 같은 날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피고 E에, 나머지 금원은 2020. 5. 15.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피고 D와 2020. 5. 25. 1차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원고 사이에 안분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출급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3채무자인 G가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으로서 이 사건 공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다만 채권양도로 인한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으로서의 유효성만 문제된다 할 것인바,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다. 피고 C,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는 2020. 5. 15.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피고 D와 2020. 5. 25. 1차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원고 사이에 잔여 공탁금을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원고의 최종 출급금액을 계산하여 청구하였는데, 자백은 사실에 대한 진술에 한정되는 것이고(원고 스스로 피고 D의 가압류 결정문 송달이 원고의 1차 채권양도 통지서 도달에 앞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우열의 결정은 법률효과에 관한 것으로서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자백간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아래 라의 1)항과 같이 일부 인용하기로 한다].

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628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1, 2차 채권양도 후 G의 채무에 대해 ① 원고의 2차 채권양도 통지, ② 피고 E의 채권양도통지, ③ 피고 D의 채권가압류 결정문, ④ 원고의 1차 채권양도통지가 순차적으로 G에 도달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893,994,29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1차 채권양도는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1, 2차 채권양도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그 효력에 관한 피고 B, D, F(이하에서는 위 피고들을 '피고들'이라 한다)의 주장에 관하여도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 여부

피고 D 및 피고 B은, 1차 채권양도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매우 긴밀한 관계 또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채무부담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원고가 2020. 5.경 편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C가 장기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고, 그 거래규모 및 거래비중이 매출액의 24%를 차지할 정도이며, 1차 채권양도 당시 지급어음의 연장 여부 및 추가 담보제공의 가부 등과 관련하여 실무자들 간에 다수의 업무연락이 이루어진 점과 상당한 담보가 제공된 점 등은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1차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거래규모 등에 맞추어 충분한 담보를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1차 채권양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1차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2차 채권양도에 관한 무효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해제조건 성취 또는 피담보채무 소멸로 인한 효력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 및 피고 B은, 1차 채권양도가 피고 C의 지급어음 만기의 연장 요청에 따라 연장된 어음의 만기일인 2020. 1. 31.까지 어음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위 연장 어음들이 모두 만기일에 결제된 바, 이로써 1차 채권양도 계약서상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거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위 채권양도의 효력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2019. 6. 21. 원고에게 약 22억 원 상당의 지급어음의 만기 연장을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6. 28.까지 위 피고에 어음 만기 연장에 따른 지연이자 납부, 연장 어음 만기(2020. 1.

31.)까지 담보로 G에 대한 매출채권양도계약서 작성할 것' 등을 조건으로 어음의 만기 연장 및 추가 공급을 약속한 사실, 이에 따라 2019. 6. 27. 작성된 1차 채권양도 계약서 제4조에 '본 채권양도는 기

확정된 채권 및 장래 발생할 상거래채권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피고 C가 2020. 1. 31.까지 원고에게 위 표시채권 일체를 상환하였을 경우, 본 채권양도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5조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는 위 제4조 소정의 상환의무 미이행시 실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1차 채권양도 당시 연장 어음의 지급을 담보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제4조의 '표시채권'이란 '제3채무자 G가 피고 C에게 지급할 기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상거래채권 중 22억 원'으로, 장래의 물품대금채권의 상환도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위 당사자들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 및 거래규모에 비추어 보면 결국 당사자들의 최종적인 의사는 위 채권도 피담보채권에 포함한다는 것이므로, 위 연장 어음 및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물품대금채무가 상환·변제되었다고 하여 위 채권양도가 효력을 상실하였다거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여 담보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사해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1, 2차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893,994,292원(이하 '소결론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한편,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의 성격을 함께 지닌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혼합공탁은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으로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893,994,29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가 아닌

집행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게 피고 C의 G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1, 2차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1차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다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9. 12. 4.부터 2020. 4. 29.까지 피고 C에 공급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764,995,174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1차 채권양도 당시인 2019. 6. 27.경 피고 C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다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년 피고 C에 약 49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사실, 장기차입금이 2018년 말경 35.5억 원에서 2019년 말경 89.5억 원으로 약 54억 원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C의 총 매출규모와 2020. 1.경 원고에게 연장된 어음을 전액 결제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9. 6. 27. 당시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1차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 B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2차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2차 채권양도 당시인 2020. 5. 4.경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 C의 채무초과 여부 및 사해행위

을다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는 2019. 12. 31. 이후 지속적인 영업손실 발생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무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어 2차 채권양도일인 2020. 5. 4.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C가 피고 D에게 만기일이 2020. 3. 31.인 전자어음의 만기 유예를 요청한 점에 비추어 2020. 4.경 이미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 D의 만기 유예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좌예금 부족으로 인하여 2020. 5. 4. 당좌부도가 발생하였다.

② 피고 C가 2020. 5. 4. 당시 보유한 자산은 주로 기계설비 및 제조물 등 유체동산과 물품대금채권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계설비 등의 경우 상당 부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사실상 물품대금채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주요 자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C는 위 당좌부도가 발생할 무렵 주요 자산인 G의 채무를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양도하였는데 양도 대상 채권액도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던바 피고 C는 2020. 5. 4. 당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하게 되어 위와 같이 주요 자산을 일괄적으로 처분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④ 채권자들이 피고 C의 제조물 등 유체동산에 대한 광범위한 가압류 집행을 마침으로써 피고 C의 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피고 C 측에서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도 원고나 다른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 C는 위 당좌부도 이후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0. 5. 4. 발생한 당좌부도가 단순히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2020. 5. 4.경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피고 C가 다수의 채권자 중 한 명인 원고에게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 당좌부도 등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원고의 사해의사도 넉넉하게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2차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인 채권양도의 수익자가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나 압류 등이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공탁한 경우,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차 채권양도로 G의 채무 중 893,994,292원을 취득하였고, 위 2차 채권양도 외에 채권가압류 및 압류가 경합하여 G가 위 채무를 전액을 공탁한바,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에 이 사건 공탁금 중 893,994,292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본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용덕

판사목혜원

판사이진규

별지

1) 새로운 채권양도통지가 아니라 종전 채권양도통지를 이유로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이다.